

ESG위원회 규정

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 ESG위원회 규정

제정 2021년 6월 14일

개정 2023년 4월 24일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ESG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달리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, 투명한 지배구조와 준법경영의 기반을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10조에 열거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2장 구성

제4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장 등)

-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하되, 지정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1. 사외이사 중 연장자
 2. 사내이사 상위직급자와 기타비상무이사 중 연장자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 (소집)

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 (소집권자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12시간 전에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 (의사진행 및 결의방법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,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진술 청취, 현장 실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
 - 2.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
 - 3. 준법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
 - 4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
 - 2.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
 - 3. 핵심 준법 리스크의 관리 등 준법통제에 관련된 중요 사항
 - 4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4 장 보 칙

제11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위원회는 의사록 사본을 회의 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지원부서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.
- ②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주요 ESG 중장기 목표 및 관리 지표 설정 지원
 2. ESG 활동 평가 및 성과 관리 지원
 3. ESG 관련 대외 Communication
 4. 위원회 소집통지, 부의 안건의 준비 및 배포, 의사록 작성 및 부의 안건의 사후관리 등
 5. 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한 실무적 지원

제13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 (2021. 6. 1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3. 4. 2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